

4.3.5 계절학기운영규정

제정	2000. 04. 21.
개정	2006. 10. 19.
개정	2009. 11. 10.
전부개정	2013. 11. 29.
개정	2016. 06. 23.
개정	2018. 07. 26.
개정	2018. 12. 04.
개정	2019. 02. 27.
개정	2022. 07. 28.
개정	2022. 12. 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 (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학칙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하계 및 동계 방학 중에 개설하는 계절학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계절학기란 조기졸업 희망자 및 필수과목 미이수자, 또는 기타과목 이수 희망자를 위하여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는 수업을 말한다.

제3조(수강자격 및 과목) ① 수강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에 소속된 재학생으로 하며 교환학생, 시간제 등록생 및 졸업유예자는 제외함. 단 군입대휴학자 중 복학예정학기 직전에 개설된 계절학기 수강이 가능한 경우에는 포함 <개정 2018.07.26>

2. 본교와 학점교류협약이 체결된 대학 소속 학생

② 계절학기에는 본교 및 본교와 학점교류협약이 체결된 대학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③ 계절학기 개설 대상 과목은 1개 학기 이상 개설 학기가 경과한 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9.02.27.>

④ 단, 현장실습학기제 경우 학생현장실습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2.07.28.>

제4조(수강신청학점) 계절학기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계절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전에 F학점을 받은 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수강가능한 학점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6.06.23. 2018.07.26>

1. 삭제<2018.07.26>

2. 해당 학년도 이수학점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4.0 이상인 학생이 기준학점(학기당 18학점) 외 추가 이수한 학점은 42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6.06.23. 2018.07.26>

제5조(설강기준) 수강학생수가 10명 미만의 교과목은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학점인정) ① 계절학기에 이수한 과목은 학기 석차에는 반영하지 않으나 졸업학점과 전체 평점평균에는 반영한다. <개정 2016.06.23>

② 계절학기 학점취득으로 졸업요건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정규학기에 등록하여 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신청이 가능하다. 단, 8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의 졸업직전 계절학기에 이수한 학점은 당해년도 졸업사정에 반영

된다.

③ 학점교류협약 체결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이수구분은 교양과목의 경우 교양선택으로 하고, 전공과목은 전공 선택 또는 일반선택으로 한다. 단, 본교 교육과정과 유사한 과목의 경우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수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18.12.04.>

④ 학점교류협약 체결 대학에서 송부하는 경우 우리 대학 개설기준 이수 구분으로 송부한다. <신설 2022.07.28.>

제7조(수업료) 계절학기 수업료는 학점(단, 0학점 과목의 경우 시수(강의시간))단위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이를 확정·공고한다. <개정 2018.07.26., 2022.12.07.>

제8조(미등록 수강취소) 계절학기는 지정된 기일 내에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 수강취소 처리한다. <개정 2018.12.04>

제9조(수강철회) 계절학기는 수강철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10조(등록취소) ① 계절학기는 수강신청, 수강변경, 등록 등 계절학기 수강의 모든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는 수강변경 및 등록취소를 허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으로 학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통하여 등록취소를 허용할 수 있다.

1. 기업체 인턴 또는 취업자

2. 군입대자

3. 수술,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질병으로 5일 이상 결석이 불가피한 자

②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료 납부영수증, 관련증빙(인턴은 인턴증명서, 취업은 재직증명서, 군입대는 입대영장, 질병은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을 첨부한 취소요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04>

③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수업료의 반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04>

1. 개강전일까지 취소 : 수업료 전액 <개정 2018.12.04>

2. 개강후 1/3 경과 전 취소 : 수업료의 5/6 해당액 <개정 2018.12.04>

3. 개강후 2/3 경과 전 취소 : 수업료의 2/3 해당액 <개정 2018.12.04>

4. 개강 후 2주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신설 2018.12.04.>

제11조(강의비) 계절학기 강의비는 학점당 초과강의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개설기준에 미달하는 과목을 불가피하게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 강의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9.02.27.>

제12조(적용규정) 계절학기 운영에 관하여 위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07.>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